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1. 4. 12. 제천시장
- 나. 회부일자 : 2011. 4. 12.
- 다. 상정일자 : 2011. 4. 19.(제181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회의)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기획감사담당관)

가. 제안이유

- 제천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 대한 신변 보호와 신고보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 모든 시민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공무원 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기간을 규정함.(안 제4조)
 - 해당 행위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로 하되,
 -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횡령 또는 유용의 경우 5년 이내로 함
- 부조리의 신고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방문, 우편, 전자우편, 인터넷홈페이지·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 및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별지신고서에 의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신고서 처리는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 조사를 완료해야 함.(안 제6조)
- 조사결과 처리는 감사 또는 조사 종료후 7일이내에 신고자에게 통지함.(안 제7조)
- 신고자의 비밀 및 신분 보장, 보복행위금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내지 제10조)
- 신고보상금 지급기준액(1건당 1천만원이하)과 지급절차, 지급제외 대상, 환수에 관하여 규정함(안제13조 내지 제15조)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홍완식)

- 본 조례안은 공무원등의 부조리에 대한 신고 보상금 지급과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므로써, 공직비리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여 부조리를 근절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 부조리의 신고대상과 신고기한, 신고방법, 처리등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여 누구나 쉽게 부조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보장, 보복행위금지를 규정하여 일반시민 및 내부 신고자의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 보상금 지급기준과 보상금 지급절차등을 규정하는등 부조리 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 청렴하고 공정한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공직자의 청렴 리더십 확립과 법제도의 정비 및 알선청탁등 공직사회의 관행적 부조리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나
 -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공직자 부패문제는 공직기강 해이문제와 사회전반의 법질서까지 느슨해질 우려를 낳고 있는 실정입니다.
 - 더욱이 우리시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2010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종합청렴도가 8.16으로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전 직원의 인식과 실천 분위기 조성,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시의 적절한 한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 등의 저촉사항이 없는바 법적 이견은 없습니다.
 - 부조리 신고 활성화에 핵심이 될 신고 보상금의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대부분의 자치단체와 유사하나(경기도 30억) 보상금 지급실적은 서울시를 제외하고 나머지 자치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바, 적극적인 홍보와 신고자의 철저한 보호 대책으로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4. 결의 및 답변 (답변자 : 기획감사담당관)

“없 음”

5. 기타의견

“없 음”

6. 토론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심사보고 붙임서류

- 제천시 부조리 신고자 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안 1부. 끝.